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7
----------	-----

제출년월일 : 2017. 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률을 축소하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등 정비

- 대체취득 규정 명확화(안 제2조제4항)
- 대체취득 추정조항 보안(안 제2조제5항)

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감면율 축소(안 제8조)

- 100분의 100 → 100분의 50

다.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안 제9조)

- 2017.12.31. → 2018.12.31.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2017-528(2017.4.27~5.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감사실-5170호/2017.4.27)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감사실-5877호/2017.5.18)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주민생활지원과-27101호)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2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17년”을 “2018년”으로 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에 따른”을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1항제1호 중 “제50조제1항에 따른”을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 중 “2017년”을 “2018년”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3조에 따라 법 제3조의2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신 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  
-----







(별첨 1)

## 관 계 법 령

###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 지방세징수법

2017년 3월 28일 법률 제14524호로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첨 2)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재무과장 이정의
연락처	(033) 330 - 2270